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1가단52556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지배인 B, C, D

피 고 1. 망 E의 소송수계인 F

2. 망 E의 소송수계인 G

3. 망 E의 소송수계인 H

4. 망 E의 소송수계인 I

5. 망 E의 소송수계인 J

피고 1, 2, 3, 5의 소송대리인 I

변 론 종 결 2023. 5. 3.

판 결 선 고 2023. 7. 12.

주 문

1. 망 E와 I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8. 11. 28.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9,220,192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망 E의 소송수계인 F, G, H, I, J은 원고에게 각 1,844,03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 망 E의 소송수계인 F, G, H, I, J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원고는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2) 망 K와 망 E 사이에서 자녀들로 F, G, H, I, J이 있다.

나. 원고의 I에 대한 지급명령 등 채권

원고는 I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526781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14. “I은 원고에게 6,924,214원과 그중 4,16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正本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이라 한다)이 2018. 1. 11. I에게 송달되어 2018. 1. 26. 확정되었다.

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 1) 망 K는 2018. 11. 28. 사망하였고, 망 K의 상속인들인 배우자 망 E, 자녀 F, G, H, I, J은 상속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망 E 단독명의로 상속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 2) 법정상속분은 망 E 3/13 지분, F, G, H, I, J 각 2/13 지분이다.

라. 망 E의 사망 및 소송수계

1) 원고는 2021. 9. 16. 망 E를 상대로, 망 E와 I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망 E는 소송계속 중인 2022. 4. 7. 사망하였다.

2) 이후 망 E의 상속인들인 피고 망 E의 소송수계인 F, G, H, I, J(이하 각 ‘피고 소송수계인 F, G, H, I, J’이라 한다)이 망 E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 E와 소외 I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망 E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그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 성립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관련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참조).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2)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I이 아래 각 기재 부동산 중 각 57905분의 18234.8 지분을 소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 각 부동산은 I을 비롯한 10여명의 공유재산에 해당할 뿐 아니라, 아래 각 부동산 중 I 지분에 제3자(L, M, N)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법리에 따라 아래 부동산들 중 I 지분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 강원도 인제군 O
- 강원도 인제군 P
- 강원도 인제군 Q
- 강원도 인제군 R
- 강원도 인제군 S

- 강원도 인제군 T
- 강원도 인제군 U
- 강원도 인제군 V
- 강원도 인제군 W
- 강원도 인제군 X

그 밖에 I에게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으므로 I이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2/13 지분을 망 E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I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I은 그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망 E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송수계인들은, I이 이미 망 K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증여받는 등 특별수익을 하였으므로 위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소송수계인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소송수계인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1)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E와 I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참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일 당시 별지 기재 부동산 중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이후인 2019. 2. 15.
 말소되었으므로(갑 제2호증),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한다.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해행위일(2018. 11. 28.)에 가장 근접한 2018. 11. 26. 기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99,000,000원이고, 근저당권 말소일(2019. 2. 15.)에 가장 가까운 2019. 1. 15. 기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98,985,148원이다(을 제4호증). 한편, 사해행위일 및 변론종결일 기준
 별지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각 3억 2,5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갑 제4호증).

○ 변론 종결일 기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 10,235,687원[= 원금 및 이자 6,924,214원 +
 지연손해금 3,311,473원(원금 416만 원에 대한 2018. 1. 12.부터 변론종결일 2023. 5. 3.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수익자 망 E가 취득한 수익액 : 34,769,230원[= (사해행위 당시 시가 3억 2,500만 원 - 말소된
 근저당권에 관한 사해행위일 기준 피담보채권액 99,000,000원) × 2/13 지분, 원 미만 버림]

○ 변론종결일 기준 별지 기재 부동산 공동 담보가액: 34,771,515원[= (변론종결일 기준 시가 3억
 2,500만 원 - 말소된 근저당권에 관한 말소 당시 피담보채권액 98,985,148원) × 2/13 지분, 원
 미만 버림]

3) 소결

따라서 망 E와 소외 I 사이에서 체결된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13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가 구하는 범위에 따라 9,220,192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망 E의 상속인들인 피고 소송수계인들은 원고에게 위 가액배상액 중 자신의 상속분(1/5지분)에 상당하는 각 1,844,03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판사 백두선

별 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의정부시 Y에 있는
Z아파트 AA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AB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AC
철근콘크리트조
59.09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및 대지권의 표시

1. 경기도 의정부시 Y 대 9134.2㎡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9134.2분의 25.074

